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중심으로

남 근 우*

-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II. 조조(朝朝)무역과 남북교역의 경제적 배경
- III. 북한의 대남교역 및 조조무역의 특징
- IV.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 유형
- V. 결론을 대신하여: 남북교역 재개 대비를 위한 제언

국문요약

이 글은 북일무역과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이전을 중심으로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교역과정에서 경험했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이들이 경험했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의 원인, 특징, 그리고 행태를 유형화하여 향후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하고자 한다. 과거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북한과 경제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향후 남북교역

이 재개되면 북한의 잘못된 상업거래 관행은 저절로 근절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들은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한 훌륭한 반면교사이다. 정부와 기업은 남북교역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재일상공인, 조총련, 남북교역, 상업거래, 통일전선부(통전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 한양대학교 강사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이 글은 북일무역과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이전을 중심으로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교역과정에서 경험했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들이 경험했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행태를 유형화하여 향후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하고자 한다.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감은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석상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은 남북교역 재개에 부정적인 외부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남북교역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무력도발 자제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남북교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 등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면 대북제재 이후를 대비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교역 재개와 관련한 논의들은 주로 우리의 기준에서 남북교역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고 남북한 모두에 호혜적일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은 왜 남북교역에 참여하려고 할까? 북한은 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남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할 것인가? 북한의 어느 기관이 남한 기업인을 상대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북한체제의 특성에 맞춰 생각해 보면, 남북교역 재개를 위해서는 논리개발과 사업 아이템 발굴도 중요하지만, 과거 남북교역에서 나타났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른다. 과거 남북교역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재일상공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 재일상공인들은 북한에 많은 외화를 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공업화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설비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의 투자를 공짜로 인식했다는 일화는 재일상공인들의 증언을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선금금과 생산설비가 요구되었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클레임을 걸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심지어 북한의 현장방문이 어려워 투자현황과 회사운영 파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 철수 시 자산몰수도 비밀비재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들이 5·24조치 이전의 남북교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남북교역의 환경은 많이 변했을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대외무역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행태도 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행태는 남한 기업인과 재일상공인에게 유독 심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왜 중국과 달리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에게 비상식적인 거래 행태를 보였는가? 남북교역이 재개될 경우 과거 북한이 보였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들은 사라질 것인가? 향후 남북교역은 당위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의 상업거래 원칙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교역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체제 특성상 곧바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교역환경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교역을 바라보는 남북당국 간의 냉정한 시각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대북사업 현장에서 경험했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야만 남북교역 재개 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비한 제도개선과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그나마 재일상공인이 경험했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은 방북자의 수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¹ 이후 합영사업을 운영했던 재일상공인이 1994년 『세계』에 이 문제를 기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² 뒤이어 1995년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가 합영회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원료공급의 문제, 계약불이행, 임의적인 사업비 및 인건비 인상, 비자발급 등의 문제들을 직접 북한당국에 제기하였다.³ 그러나 국내에서는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연구가 상당

¹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金元祚, 『凍土の共和國: 北朝鮮幻滅紀行』(東京: 亞紀書房, 1984); 韓光熙, 『我が朝鮮総連の罪と罰』(東京: 文藝春秋, 2002).

² 북한에서 모란봉합영회사를 운영했던 전진식씨는 뇌물, 계약불이행, 관료주의 등 합영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全鎮植, “祖國との合弁は在日の糧,” 『世界』, 10月号 (1994), pp. 107~110.

히 미흡하다.⁴ 북한의 상업거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했던 북한 파트너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한, 일본, 그리고 북한의 무역일꾼과의 심층면접은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연구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연구풍토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 그리고 탈북무역일꾼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인터뷰는 2017년 3~6월까지 남한 기업인과 탈북무역일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재일동포 사업가에 대한 인터뷰는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 2차례에 걸쳐 히로시마에서 진행하였다. 피면접자 조사명부는 <표 1>과 같다.

<표 1> 피면접자 조사명부

피면접자	성별	연령	지역	사업시기 (탈북연도)	분야 및 직업
A1	남	50대	서울시	2001	남북경협
A2	남	50대	서울시	2006	남북교역
A3	남	50대	서울시	1989	위탁가공교역
A4	남	50대	서울시	2006	남북교역
A5	남	50대	서울시	2000	남북경협
A6	남	50대	인천시	1998	위탁가공교역
A7	남	70대	서울시	2004	남북경협
A8	남	50대	서울시	1998	위탁가공교역
A9	남	50대	강원도	2007	남북교역
A10	남	60대	강원도	2004	남북교역
A11	남	50대	충청북도	2006	남북교역
B1	남	60대	자강도	2002	前 합영회사 사장
B2	여	40대	평양	2006	前 대외무역총국 산하 무역회사 근무
B3	남	50대	평양	2014	前 무역회사 사장
B4	남	50대	평양	2013	前 무역회사 해외대표부 부대표
B5	남	50대	평양	2003	前 당 일꾼
B6	남	50대	-	2008	前 당 산하 무역회사 근무
B7	여	40대	평안북도	2008	前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 근무
B8	여	40대	함경북도	2013	前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 근무
B9	남	50대	평양	2014	前 해외 주재 무역대표부 근무

³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經濟關係の歴史と現況,” *ERINA REPORT*, vol. 47 (2002.08), p. 41.

⁴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관한 주목할 연구는 다음을 참조. 남근우, “북한의 무역패턴변화와 대남 교역 상거래 관행,” 『북한학보』, 제42집 1호 (2017).

C1	남	80대	히로시마	1970년대	前 북일무역 종사
C2	남	80대	히로시마	1980년대	前 히로시마상공회 회장
C3	남	70대	히로시마	1980년대	前 북일무역 종사
C4	여	70대	히로시마	1990년대	前 북일무역 종사
C5	남	60대	히로시마	-	소설가
C6	남	70대	히로시마	1980년대	前 북일무역 종사
C7	남	60대	히로시마	-	前 조총련 간부

※ A: 국내 대북사업자, B: 탈북 대외무역 종사자, C: 조총련 출신 북일무역 관계자

II. 조조(朝朝)무역과 남북교역의 경제적 배경

북한이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교역을 확대했던 배경에는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크게 귀국사업기, 조조무역 확대기, 남북교역 확대기로 나뉘어 살펴본다.

1. 귀국사업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조달

북한이 재일동포사회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했던 출발은 귀국사업이다. 북한이 귀국사업을 추진했던 경제적 배경에는 1960년대 자력갱생의 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외화 및 생산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⁵ 귀국사업은 195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급감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외화, 생산설비 및 다양한 생활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창구였다.

첫째, 북한은 귀국사업을 통해 한국전쟁 직후 부족한 숙련 노동력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었다. 전후 북한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중공업부문의 노동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노동경력을 가진 노동자는 4%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은 1년 미만의 노동경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⁶ 김일성은 1974년에 가서야 비로소 노동력 수급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만큼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심각하였다.⁷ 귀국협정에 따라 귀국사업

⁵ 귀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高崎宗司·林正鎮,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東京: 平凡社, 2005);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東京: 中央公論新社, 2009); 남근우, “북한 귀국사업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4호 (2010).

⁶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1953년 8월 5일),”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61.

이 중단된 1967년까지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조선인 88,611명의 귀국 전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8 무직자가 8,649명(39.7%)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건설 및 생산현장에 유용한 노동경력을 보유한, 토공분야 인부가 4,528명(20.8%), 공장노동자가 2,014명(9.2%)으로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이들은 분명히 유용한 노동력이었다.

둘째, 귀국사업은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와 각종 생활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였다. 귀국자들이 소지한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1959년 12월 제1차 귀국부터 1960년 10월 제44차 귀국까지 귀국자들이 소지한 금액은 약 1억 3천만 엔이었다.⁹ 1959년 12월 14일부터 1960년 12월 16일까지 1년간 귀국자가 51,978명으로 전체 귀국자 93,340명의 55.6%가 귀국한 점에 비추면 많지 않은 금액이다.¹⁰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돈이 있어도 생활물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귀국자들은 일본의 친인척들에게 생활물자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 많은 생활용품을 공급받았다.¹¹

셋째, 귀국사업을 통해 재일동포 기업가와 기술자 집단이 북한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휴대하고 귀국하였다. 1961년 2월 조총련은 북한의 경제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가와 기술자들의 우선적 귀국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비닐·플라스틱가공, 미싱제조, 양복가공, 제화, 자동차정비, 정밀기계제조, 렌즈제조, 도장, 도금 등 다수의 기업이 및 기술자집단들이 공장 설비를 갖고 귀국하였다.¹² 그 결과, 1965년 1월 122차 귀국 때 1인당 평균 귀국물품이 2톤을 초과한 이후 동년 4월 124차 귀국 때 3.4톤, 1967년 4월 148차 3.6톤, 6월 150차 4.3톤, 7월 151차 5.8톤 등 1인당 평균 귀국물품의 중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¹³ 1인당 귀국물품의 무게가 증가한 원인에는 공업용 기계와 생산설비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귀국자들이 가지고 들어간 각종 기계와 장비들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⁷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69년 2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42.

⁸ 內閣調査室,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について(下),” 『調査月報』, 第150号 (1968), p. 69.

⁹ 木村光彦·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東京: 知泉書館, 2008), p. 65.

¹⁰ 金英達·高柳俊男 編,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東京: 新幹社, 1995), p. 341.

¹¹ 북한으로 귀국한 아들에게 한 번 보내는 물품비용으로 약 10~20만 엔을 지출했다는 사례가 있다. 1960년 쉐러리맨의 평균 연간수입이 50만 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에 남아 있던 친인척들이 귀국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물품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康日妹, 『本を読む兄本を書く妹』 (東京: 星雲社, 2006), pp. 47~49.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필자가 인터뷰한 재일동포는 2014년까지 북한으로 귀국한 가족에게 생활물자를 보냈는데, 한 번 보낼 때의 양은 100cm×50cm 크기상자 5개였다고 한다(C6).

¹² 木村光彦·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p. 85.

¹³ 內閣調査室,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について(下),” pp. 69~71.

활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양이 북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1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2. 북일무역 쇠퇴와 조조무역(朝朝貿易)의 확대

북한은 귀국사업을 통해 1960~7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재일조선인사회로부터 추출했다면,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이었던 기계화에 필요한 대규모 생산설비는 1961년부터 시작된 민간차원의 북일무역을 통해 도입하였다. 1960~70년대 북한의 경제발전계획의 목적이 중공업 분야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계화와 기술혁신이었다는 점은 북한이 일본기업으로부터 관련 생산설비의 도입을 필요로 했던 이유였다. 일본기업들은 북한에 공작기계, 광산기계, 계측기, 발전설비 등 주로 생산설비 플랜트를 6~8년 장기연불로 수출하고 대금의 일부를 북한산 광물자원, 농수산물, 및 섬유원료 등으로 수입하였다.¹⁴ 일본기업의 대북 연불수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과 통산성의 보험제도 및 후불결제와 같은 결제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61년부터 민간차원의 북일무역을 활발해지면서 1960년대는 주로 북한이 북일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지만, 1972년부터 1986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일무역이 증가할수록 북한은 주된 수출품인 광물 수출을 늘려야하지만, 전력, 항구, 도로 등의 인프라가 열악해 광물의 대량 수송이 어려워 수출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⁵ 광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본에 지불해야 할 수입대금의 상환액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1970년대 초반 세계석유 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인 석유나 기계류의 가격이 상승하고, 반면에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과 수출의 균형이 깨져 일본기업에 지불할 채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일본기업과의 연불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만기차관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기업의 대북한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북한과 무역하던 일본기업들은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많아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용자와 통산성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북한의 채무 불이행으로 1975년부터 수출용자와 보험업자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과 일본기업들은 수출대금결제 변제문제

¹⁴ 木村光彦·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p. 71, p. 102.

¹⁵ 위의 책, p. 104.

를 협의하고 미지불 채무원금 800억 엔을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3년 6월까지 원금 약 100억 엔과 이자 약 300억 엔을 변제하고 채무변제를 중단하였다.¹⁶ 북한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1986년 9월 일본기업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대금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급을 일본정부에 구상 청구하여 통산성이 약 300억 엔을 해당기업에 지불하였다.¹⁷

북한은 1970년대 후반 미결제 채무문제로 인해 대외신용도의 하락과 북일무역의 쇠퇴로 외화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안정적인 외화벌이를 위해 재일상공인과의 무역을 추진하였다. 재일조선상공인의 대북 직접투자는 1970년대 시작된 조국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금납부, 송금, 제조업 투자, 그리고 단순교역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졌다.

북한으로 귀국한 친인척을 둔 재일상공인들은 조국방문단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가족상봉의 대가로 많은 금액을 북한에 현금하였다. 예를 들어 1974년 히로시마에서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방북할 당시 총 5,000만 엔을 북한에 지불하였다고 한다. 이 중 단장은 1,000만 엔을 지불하였고, 기타 인원은 300~700만 엔을 납부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한다(C2). 1979년 조국방문단의 총무를 맡았던 조총련 간부 역시 이와 유사한 증언을 하였다. 방문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0~300만 엔을 현금해야 했고,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00만 엔을 기부해야 했다고 한다. 보통 한번 방북단이 구성되면 2~3억 엔이 모금되었고, 년 간 15~20회 정도의 방북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년 30~60억 엔이 북한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⁸ 1972년부터 1986년까지 북한이 대일무역을 통해 매년 200~400억 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¹⁹ 재일상공인들의 현금은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를 일정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방북한 재일조선인들은 북한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목격하고 중고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주었다.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가족들은 일본에서 보내준 물품 중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고 남는 것은 암시장에서 쌀, 계란, 야채 등으로 바꾸기도 하였다고 한다.²⁰ 북한은 방북단이 올 때마다 다양한 경공업 물품을 가져오자 그 중에서 경제력이 있던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수산물,

¹⁶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經濟關係の歴史と現況,” p. 33.

¹⁷ 이찬우,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9), p. 50.

¹⁸ 韓光熙, 『我が朝鮮總連の罪と罰』, p. 223.

¹⁹ 日本 総務省統計局, 『日本統計年監』, 各年度.

²⁰ 小熊英二·姜尙中 編, 『在日一世の記憶』 (東京: 集英社新書, 2008), pp. 43~44.

농산물, 석재, 모래, 골동품, 그림, 우표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위탁판매를 제안하거나, 제조업 분야의 설비시설 투자와 합영사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사업협회는 재일상공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북한산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서 판매한 후 수익을 북한 간부와 나누거나, 재방북시 수산물이나 광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설비투자의 경우 일본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설비를 구입하여 만경봉호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수산물의 경우는 어망, 어구와 같은 설비를 제공하고 포획된 수산물을 공해상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기도 하였다(C3, C4).

재일상공인들의 대북 직접투자는 합영사업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기 전부터 재일동포사회를 향해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투자를 유도하였다.²¹ 1986년 2월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결성 40주년 기념방문단이 방북했을 때는 합영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²² 합영사업이 추진되던 1986년부터 북일 무역은 감소하기 시작해 1987년부터 북일무역이 중단된 2010년까지 북한의 대일 수출이 일본의 대북수출을 상회하는 경향으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북일무역의 수출입 품목도 변하였다. 그동안 일본의 주요 대북 수출품이었던 기계설비류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섬유제품의 위탁가공이 북일무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대북수입에서도 금속제품과 광산물 비중이 감소한 반면, 섬유제품과 수산물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1986년부터 시작된 재일상공인과 북한 간 설립한 합영회사의 영향이 컸다. 당시 합영회사가 주로 섬유 등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생산제품이 북한 내수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섬유제품의 대북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B1).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 말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자, 기계, 화학, 의류, 식품, 광산 등 분야에 걸쳐 147건에 달했는데 이중 88%에 해당하는 130건이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투자로 알려졌다. 한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 대장성에 신고된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 투자는 32건 3,132만 달러로서 투자 시기는 1988~1989년에 집중되었고 업종별로는 섬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²³

²¹ 김일성,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5차 분회열성자대회에 보낸 축하문(1982년 6월 19일),” 『김일성저작집 3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89.

²²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經濟關係の歴史と現況,” p. 40.

²³ 이상민,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서울: KOTRA, 2006), pp. 3~4.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일상공인들의 직접투자는 감소하였다. 재일상공인들의 대북투자 감소는 전체적으로 북일무역의 감소로 이어졌다. 열악한 전력사정과 도로, 통신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사업을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운영하지 않고 계획경제의 통제방식으로 운영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일상공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상거래 방식은 재일상공인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회피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조조무역의 쇠퇴와 남북교역의 확대

조조무역이 쇠퇴하던 1990년대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아시아로 변하던 시기이다. 1990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구소련과 동구권이 점하는 비중은 64.1%였고, 다음으로 아시아권이 32.2%를 점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1991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59.7%로 증가하였고, 유럽은 27.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아시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부터는 90%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95%로 더욱 커졌다.²⁴

전체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아시아권의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 남한과의 교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0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1년 대외무역 비중이 22.6%로 증가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특히, 2005년 대외무역의 비중이 52.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2014년부터 90%를 상회하고 있다.²⁵

1988년 7·7선언과 대북경제 개방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크고 작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양적인 측면에서 1989년 25개 품목 1,872만 달러를 시작으로 5·24조치가 있었던 2010년에는 795개 품목 19억 1,224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5·24조치 이후에도 개성공단의 확대로 2015년 남북교역액은 742개 품목 27억 1,447만 달러를 기록해 1989년에 비해 약 150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남북교역

²⁴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연도별.

²⁵ 남근우, “북한의 무역패턴변화와 대남교역 상거래 관행,” p. 128.

을 북한의 대외무역에 포함시킬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1%에서 2015년 30.3%로 2배 성장하였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초기 단순 물자거래에서 위탁가공교역,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²⁶ 반면에 북일무역은 1961년 북일 간 직접교역이 시작된 이후 1980년 1,259억 2,400만 엔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09년 262백만 엔을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일본은 2001년까지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중요 무역상대국이었다. 더군다나 1987년부터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가 있기 전까지 북한은 2001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일본인 납치문제가 이슈화되고 2006년 제1차 북핵실험으로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하게 되면서 북일무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남한은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그 결과 2000년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일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억 6,365만 달러(19.4%)로 중국의 4억 8천803만 달러(20.4%)에 2천500만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현실에서 2003년 대일교역의 비중이 8.5%로 처음으로 10% 이하로 감소한 이후 2006년에는 2.8%로 급속히 축소되었다. 이후 일본은 2007년부터 북한의 10대 교역 대상국에서도 제외되었고, 2009년 6월부터 북일무역은 완전 중단되었다.²⁷

북일무역이 축소되기 시작한 이 시기부터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과 2005년에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이다. 이전까지 북한은 외국인투자관계법에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라는 표현으로 남한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조와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는 투자대상을 ‘남측 및 해외동포’로,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한의 법인, 개인’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북교역의 제도화를 위해 법제 정비를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확대해 남한으로부터 경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2000년대 들어와 북일무역이 축소되고, 대중국무역 의존도가 심해져 대중무역 적자가 커짐에 따라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5·24조치 이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거대성 남북교

²⁶ 남근우, “신(新)남북교역체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 (2016), p. 4.

²⁷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연도별.

역에서 송금방식과 임가공료지급방식이 전체 대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84.2%, 2007년 81.8%로 매우 높았다. 5·24조치 이후 남북한 간 교역이 단절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의 대금결제 유형을 보면, 전체 결제유형 가운데 임가공료지급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가 92.5%로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²⁸ 비록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가 북중무역 적자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마저도 없었다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교역하던 시기는 북한의 대외신용도가 낮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중무역 편중의 대외무역으로 만성적인 대외무역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북한은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을 생산설비와 외화획득의 창구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재일상공인 및 남한 기업인과 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조조무역과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Ⅲ. 북한의 대남교역 및 조조무역의 특징

1. ‘대적(對敵)관계’로 사업진행

북한에서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통제 및 승인하는 기관은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이다. 통전부는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해외동포사업을 주관하고 대남관계의 창구기능을 수행하면서 북한식 통일을 위해 민족통일 전선체 형성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의 핵심부서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재일동포 및 남한과 관련된 경제사업은 남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한 동조세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적관계’로 진행된다(B1, B2). 통전부가 사업전반을 통제하기 때문에 재일상공인이든 남한 기업인이든 관계없이 이들과 사업거래에 활용되는 전화, 팩스 등 통신은 모두 당에서 검열한다. 특히 팩스의 경우, 해당 기업소가 아닌 검열기관으

²⁸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산출. 2008년의 경우, 관세청에서 결제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반출입 비중이 전체의 68.3%에 달해 송금과 임가공료 지급 등 결제유형별 반출입 현황의 통계산출이 불가능하다. 2009년의 경우 아예 결제유형별 반출입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로 발송되기 때문에 기업소 직원이 검열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야 한다(B1).

재일상공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통전부 산하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통전부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 내각 소속의 교포사업총국(현 해외동포사업국)이 사업승인의 창구 혹은 연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이 재일동포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재일동포의 방북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유도하였다(B2). 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외화벌이 사업이나 통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족상봉의 명목으로 방북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소속 일꾼은 북한 무역회사 명함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파트너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재일상공인이 방북이나 투자를 희망할 경우 북한에서 보위부원과 해당 사업을 잘 아는 경제일꾼으로 구성된 조직이 일본에서 해당 재일상공인과 접촉하는 시스템이다.

둘째, 교포사업총국이 북한에 거주하는 귀국자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다(C3). 교포사업총국은 북한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를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데, 도·시별 인민위원회 교포지도원이 재일조선인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 교포지도원은 방문단으로 방북한 재일조선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여 투자나 합영회사 설립을 유도하였다. 또한, 교포지도원은 귀국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재일동포의 투자유도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재일동포가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교포지도원은 조총련을 통해 해당 재일동포에 대한 신원을 파악한 후 투자유도나 공장, 기업소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B3).

남한 기업인이 대북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에서 무역회사 명함을 소지한 북한측 인사를 만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과 사업경험이 있거나 거래방법을 조언해줄 수 있는 조선족 혹은 해외동포로부터 대북사업 제안을 받는 경우이다. 셋째,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대북사업을 소개받은 경우이다(A1, A2, A3, A4, A5). 당시 남북교역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남북교역의 무관세 효과와 품질 대비 저렴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 그리고 국내시장의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북한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재일상공인의 대북투자는 통전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교포사업총국이 창구기능을 수행했다면, 남한 기업인의 경우 통전부 산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

회(이하 '민경련')가 창구기능을 수행하였다. 남한 기업인은 북한의 직접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민경련을 통해서만 계약체결이 가능하였다. 민경련은 북한의 경제기관들이 남한 기업인을 자율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립된 대남경제협력과 교류에 대한 총괄적이고 일원화된 감독 및 통제를 전담하는 대남접촉 창구기관이다. 민경련은 대남경제사업의 북한측 단일창구기능을 수행하는 중계기구이지 직접 생산기관은 아니다. 북한은 대적관계로 남북교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남한 기업인에게 먼저 사업제안을 하기 보다는 남한 기업인이 민경련의 베이징사무소나 단둥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 기업인들은 이곳에서 민경련 소속 실무자와 접촉해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구체적인 북한측 생산파트너 및 생산현장에 대한 정보 없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 기업인이 민경련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사업신청서는 민경련을 통해 통전부, 보위부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민경련 산하의 생산분야별 총회사가 남한 기업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북한 내 기업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하청을 준다. 민경련은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 전담창구로서 계약체결에서부터 물품인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지만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재일상공인의 대북투자는 통전부가 통제하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 교포사업총국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창구기능만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남북교역과 같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이들 기관과 관계없는 부서의 일꾼이나 사업능력이 있는 개인이 재일동포 투자자와 사업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할 경우 사장으로서 직접 사업수행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 교포사업총국 소속 교포지도원은 기본적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 투자로 이끄는 역할은 북한의 무역일꾼이든 그렇지 않든 재일동포와 관계를 맺고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행하였다. 재일동포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사람은 재일동포의 신상정보를 교포지도총국이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통해 조총련의 신원조회를 거친 후 투자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 교포지도총국의 승인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 최종 사업승인이 결정되고 합영회사 설립이 논의 되면 승인을 획득한 북한 파트너가 해당 회사의 사장이 되는 구조였다(B1, B3). 결국 재일동포 투자자는 자신이 북한의 해당 기업인과 투자와 관련된 논의 및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전부의 통제와 승인 하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합영회사 설립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북한에서 사장이 결정되어 합영회사 설립계약 체결 후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외화벌이 사업으로 진행

북한은 통전부를 통해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경제사업을 통제하면서 철저하게 외화벌이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와 대외채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신용장(L/C) 거래로 대외무역이 불가능해지자 1992년 11월 국가기관과 더불어 일반 기업소도 대외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성 및 지방 단위들에서도 각 기관의 생산능력과 조건들에 기초하여 수출입 계획을 세워 계약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고 무역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²⁹ 일반 기업소도 생산뿐만 아니라, 외화벌이 무역사업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자 각 기관들은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업소가 외화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팩스와 같은 통신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회사로 승인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소는 다른 무역회사와 위탁관계를 체결하거나, 내각 혹은 당, 군 등 특수기관을 경유하여 무역회사 설립을 승인받아야 한다(B4). 이때 외화벌이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워크이다. 워크는 일종의 무역허가증으로서 워크가 없으면 외화벌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외화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공식 대외무역기관에서 워크를 배당받은 일반 기업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무역일꾼 선발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일꾼의 선발은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민경제대학 출신이거나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에서 등의 외국어 계열 출신에서 선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둘째,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경제대학 재직반(직장인반)에서 1년여 간 집중교육을 받은 후 무역일꾼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B1, B5,

²⁹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1992), p. 30.

B6). 북한이 정상적인 대외무역 활동을 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무역일꾼들은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장(L/C) 거래로 해외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무역일꾼이 해외 사업파트너를 찾는 과정은 통전부 등 특수기관원이 개인적인 안면관계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소속 무역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조사처(과)나 자료처(과)를 활용하였다. 이 부서에는 해당 무역회사가 거래했던 외국 업체의 회사명, 임직원 현황, 주소, 거래 내역·방법을 비롯해 외국 업체 직원의 가정사와 같은 소소한 개인정보까지 업체별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공식적 대외무역은 이러한 무역회사의 조사처를 통해 공식 대외무역 일꾼이 참여한다(B5).

그러나 일반 기업소도 자체적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공식 무역일꾼이 아닌 일반인도 본인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투자자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외화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C7). 재일상공인과의 무역 역시 워크가 없는 기업소나 공식적인 무역일꾼이 아닌 일반인도 투자만 유치해 오면 워크가 있는 무역기관과 위탁관계를 체결하거나 본인이 직접 워크가 있는 무역회사 산하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상공인들의 대북경제사업은 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 교포사업총국이 창구역할을 수행했지만, 직접적인 사업은 이들이 수행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대남교역의 경우 남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무역허가증인 워크가 없다. 대남교역은 대남경제사업 창구인 민경련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경련 산하 회사들은 대남교역 전용 워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현지조사 제한

보통 투자자는 투자지역의 전력, 공업용수, 도로, 항만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와 원료, 자재, 노동력 수급 현황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은 북한 현지의 생산환경을 방문해 조사하기 어려웠다. 재일상공인은 북한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나 교포사업총국 소속의 교포지도원을 통해 사업제안을 받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실제 사업파트너와 검열 받는 전화 및 팩스로 사업협의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사업파트너가 재일상공인과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일상공인은 북한을 자주 방문할 수 없어 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상공인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운송수단을 북한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C1).

남한 기업인 역시 민경련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의 생산기업소의 정확한 현황이나 투자한 설비들이 해당 공장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A6). 북한 현장 방문의 어려움은 대적관계에 있는 남한 사람이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기인한다(B4). 다만, 예외적으로 기술전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북한은 남한 기업인의 북한 현장방문과 근로자 기술교육을 위해 방북을 허용하였다(A5, A7).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한 사업장과의 자유로운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존재하였다.

그러다보니 계약과 업무협의를 민경련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생산현장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검수는 남북교역을 중개했던 중국조선족을 통하거나 중국에서 검수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개인 수수료와 검수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A8, A9). 남한 기업인은 계약을 체결한 민경련 산하 총회사와 생산공장의 상호 외에는 생산공장의 정확한 위치나 현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교포사업총국 및 민경련은 직접 생산자가 아니다. 재일상공인이나 남한 기업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측 담당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여러 사정을 물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³⁰

IV.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 유형

1. 사업과 관련 없는 금품 요구

북한측 파트너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일상공인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비’나 ‘기부’의 명목으로 많은 금액과 물품을 헌납하였다. 당시 가족상봉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능력이 있던 사람은 상공인이었고 북한은 이들에게 가족재회라는 일종의 특혜제공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금품 요구 관행은 이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의 뿌리가 되었다.

³⁰ 東北アジア問題研究所 編, 『在日朝鮮人はなぜ帰国したのか』(東京: 現代人文社, 2004), p. 94.

재일상공인은 북한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워 사업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특히 북한측 사업파트너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C3, C4). 또한, 재일상공인의 대북투자가 북한으로 이주한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의 금품요구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유로 작용하였다. 재일상공인은 북한의 친인척과 정치적 조국으로서의 북한을 돕는다는 의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는 북한에게 기부금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투자=공짜’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남북교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은 재일상공인의 경제적 투자를 기부금처럼 공짜로 받던 관행대로 남한 기업인을 대하곤 하였다. 북한과의 경험에서 남한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남한과의 경제사업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보위부, 통전부 등 특수기관의 승인과 더불어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기관에 상납할 돈이나 물품을 요구하였다(B3). 민경련은 남한 기업인들이 요구한 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중개비’를 요구했던 것이다(B5).

둘째, 북한은 남한 기업인의 사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과 상관없이 상납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A7). 북한측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상납금은 남한 기업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남한 업체의 신용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업 담보금’이었다(B6).

셋째, 남한 기업인으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한 기업인을 상대했던 민경련 소속 일꾼들은 공식적으로 받는 급여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종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중 일부는 상급기관에 상납하고 일부는 생활비와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한다(B6).

2. 선금금 및 사전 투자설비 요구

북한측 파트너는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으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은 이후 계약체결을 전후해 선금금을 요구하거나 설비, 자재, 및 운송수단의 선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의 선금금 요구행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재일상공인의 대북투자를 유치한 북한측 파트너의 경우 설립한 회사의 시장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운영과 상부에 지속적으로 바칠 뇌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비록 재일상공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선급금을 받게 되면 북한측 파트너 본인이 일정 액수를 챙길 수 있었다(B1).

둘째, 남북교역의 경우, 북한은 사업초기에 선급금을 요구하지 않다가 공급한 물품이 남한에서 판매가 잘 될 경우, 선급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한 기업인은 해당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A10).

셋째, 북한은 사업실패 시 책임회피를 위한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선급금이나 생산설비, 자재를 미리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남한 기업인을 상대할 경우 일단 선급금을 받아내야 향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자를 받아낸 간부나 부서는 상급자나 상급부서에 자신의 성과로 돈을 바치고 실무사업은 다른 단위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야 자기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 기업인이 투자한 돈에 대한 행방은 알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을 물어볼 북한측 담당자조차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선급금 요구와 더불어 설비, 자재, 원료 및 운송수단을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북한의 대표적인 상업거래 관행이다.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 중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생산설비, 자재, 원료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척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은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를 발표하고 기업소 단위에서도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외견상 생산의 자율성으로 보이는 이러한 조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자체적인 자율권 획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하부단위의 생산 자율성은 생산설비의 부족과 원활하지 못한 자재공급체계의 문제로 지방과 기업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생산자원을 동원하여 외화벌이를 하도록 위로부터 강제된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생산단위는 자체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무역활동과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도 자체로 해결해야만 하였다. 조조무역과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선 투자를 요구한 주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재일상공인의 경우, 북한의 선 투자요구는 합영회사 운영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던 문제였다. 북한은 재일상공인과 합영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한 이후에는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 생산 원부자재와 운송수단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선 투자를 요구하였다(B1). 심지어 생산설비가 고장나면 북한에서 부

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품에서 원부자재, 설비, 운송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선 투자했다고 한다.³¹ 이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들여 생산물품을 일본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였다.

남북교역의 경우, 민경련은 대남경제사업의 창구기능을 수행했지만 직접 생산기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기업인과의 계약은 물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생산기관에 하청계약을 통해 생산물품을 확보해 남한 기업인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직접 생산기관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료, 자재 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민경련은 남한 기업인으로부터 먼저 원부자재를 요구하였다. 더군다나 남한 기업인은 북한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급금과 선생산설비를 제공하고도 계약물품을 인계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하였다.

3. 계약조건 위반과 클레임 불수용

북한측 파트너들은 일반적인 무역규범에서 벗어난 신용할 수 없는 행위로 상대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계약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는 매우 어려웠다. 북한의 계약조건 위반행위는 크게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³²

첫째,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이다. 전력, 생산능력,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공정과 수송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둘째, 수량을 맞추지 못해 임의로 수량을 조작하거나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 역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아 수량을 조작하거나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 경우이다. 셋째, 선 투자한 생산자재, 원료 등 생산수단을 생산과정에 사용하지 않고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방문해 사업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한 설비와 자재들이 해당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된 경우이다. 넷째, 계약체결 이후 전력이나 원자재를 미공급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 역시

³¹ 위의 책, p. 100.

³² 물론 모두가 북한의 계약위반 행위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초기에 북한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을 경험했으나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북한측 사업파트너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 북한도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A10).

생산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측 파트너의 말만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다섯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로 판로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선금금과 생산설비, 자재 등을 받은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업체에 해당 물품을 공급하기로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여섯째, 계약체결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조건을 계약체결 후 요구하거나 투자과정에서 각종 트집을 잡아 손해 발생의 책임을 씌워 인건비 혹은 사업비를 인상하거나 투자 이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일곱째,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 혹은 부서가 바뀌어 더 이상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북한체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여덟째, 상급자 혹은 상급부서에서 계약을 불승인할 경우 계약체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클레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북한 고위급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북한 당국 차원에서 보장한 사업일 경우, 혹은 중국 조선족을 중개인으로 활용해 클레임을 걸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클레임 제기는 무용지물에 가까웠다고 한다(A11, B6, C3).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재일상공인은 귀국자 가족이 있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사업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클레임을 강하게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기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설사, 클레임을 제기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들의 투자를 공짜로 인식했기 때문에 클레임을 무시하였다(C4).

둘째, 북한은 남한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남한 기업인을 상대했기 때문에 남한 기업인이 물품의 상품성, 계약절차, 가격문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자존심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2, B6).

셋째, 남한 기업인의 클레임 제기가 어려웠던 원인에는 북한의 민경련과 다수의 남한 기업인 간에 진행되었던 남북교역의 '일대다(一對多)' 구도의 한계도 있었다. 북한과의 경제사업을 민경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경련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남한 기업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B6). 실제로 남한 기업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북한은 다른 기업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늦추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상품 인도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보여 남한 기업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였다.³³ 남한 기업인들

은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워 생산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민경련을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경련을 상대할 만큼 협상력이 크지 않아 클레임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분쟁해결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1년 북일 간 민간차원의 직접무역이 개시되면서 북한과 일본은 무역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합영법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제47조)도 있다. 남북한의 경우는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은 북한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된 수단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4. 사업철수 시 자산 몰수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은 북한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사업 중단을 겪었다. 물론 이들의 사업 중단은 북일 간, 그리고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인 갈등과 긴장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산 물품의 일본 수입을 금지했으며,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수출을 중단시켜 북일무역은 전면 중단되었다. 남북경협 역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한 간의 모든 경제사업은 중단되었다. 재일상공인들은 북일간의 정치군사적 문제 이외에 다른 이유로도 사업을 중단하였다.

첫째, 수익이 나지 않는 합영회사 운영방식으로 인해 상공인 스스로 사업을 철수한 경우가 있었다. 원부자재에서부터 생산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상공인들은 회사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북한에는 생산한 제품을 팔 수 있는 내수시장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산품을 전량 일본으로 가져가 판매해야 하였다. 합영회사가 주로 피복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고가 쌓이면 생산량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상납금을 요구하여 손해를 가중시켰다.

둘째, 북한 당국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사업중단 결정은

³³ 남근우, “북한의 무역패턴변화와 대남 상업거래 관행,” p. 144.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합영회사 주변에 외화식당과 외화상점 등이 생기면서 발생한 자본주의 의식을 차단하기 위해 검열을 통해 해산시키는 경우이다. 검열은 보통 당, 검찰,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열반이 며칠 동안 진행했다고 한다. 검열은 주로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북한측 사장의 개인 비리를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합영회사를 해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B1, B3). 다른 하나는 귀국한 재일상공인의 가족에게 범죄 혐의를 씌운 후 해결방안으로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C5)

사업철수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든 재일상공인과 남한의 기업인들은 투자자산을 모두 몰수당하였다. 단순교역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고 선금급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합영사업이나 위탁가공 교역의 경우 투자자가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계 등 고정자산과 원부자재, 완성품, 심지어 선금급 등 유동자산까지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철수 시 재산몰수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투자설비, 원부자재, 그리고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재일상공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몰수하였다(B1, C4). 남한의 경우도 5·24조치 이전 북한에 투자한 기업인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보듯이, 투자자산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군다나 북일무역에 참여했던 일본기업은 통산성의 보험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으나, 재일상공인의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피해가 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북한에 투자한 남한 기업인들 역시 북한으로부터 대위변제각서를 받아야만 하는 경험보험 제도의 문제로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받지 못하였다.

V. 결론을 대신하여: 남북교역 재개 대비를 위한 제언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은 재일상공인의 수기나 조총련합영사업추진 위원회와 같은 민간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재일상공인들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났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해 1997년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국기업의 북한 진출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³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진행되었던 남북교역에 대

³⁴ 林一信·小牧輝夫, 『苦難の行進: 金正日時代の政治經濟展望』(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97).

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들은 남북교역이 재개되어도 재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북한은 중국 이외의 국가와 대외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서는 중국 사업파트너와의 신용관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B6). 또한, 내부적으로도 시장화와 사경제 확산에 따른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계약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도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B7).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남북교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의 상업거래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교역이 재개되어도 남한 기업인이 북한 생산자와의 직접교역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화와 사경제가 확산되고 돈주들이 많아져도 경제보다 정치가 우위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통전부가 민경련을 내세워 남북교역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북한 내 이동과 유통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남한 기업인의 통신과 통행을 제한하면서 필요한 외화벌이 사업만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기업인은 북한의 생산현장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물자 및 통신의 교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민간주도의 경제사업은 정치, 군사안보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북한의 대남교역 상업거래 관행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불가항력적으로 구조화되기 전까지는 기업인 스스로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에 대해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첫째, 남북교역이 재개될 경우 기업인은 스스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선급금이나 시설, 설비, 원료 등의 선 투자는 북한 생산공장의 가동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제공해야 할지 모른다. 다만, 과거에도 선급금과 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업인 스스로 이러한 것을 제공할 때 장부에 기록해 계약위반 시 클레임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또 다른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계약체결 시 북한측 계약주체를 민경련 혹은 산하 총회사로 한정짓지 말고 계약을 이행할 생산기관과 당, 내각, 군, 도·시·군 인민위원회, 은행 등 상위기관을 계약서에 함께 명기해 상위기관의 보증을 받아놓

을 필요가 있다(B5). 예를 들어 북한의 계약주체를 ‘00성 산하 00무역회사’라고 정확히 기재해놓는 것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해당 무역회사 혹은 담당자가 사라져도 계약을 보증한 상위기관에 변제책임을 어느 정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책임지지 않으려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보증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상급기관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급단위의 변제보증 기관을 계약주체로 명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신용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셋째, 북한의 반복되는 계약위반 행위나 불필요한 금품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거래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과거 남북교역에서 남한 기업인은 북한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북한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 주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클레임을 걸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측 사업파트너와 거래를 단절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거래를 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은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용을 지킨다고 한다(B6, B8). 북한은 중국측 사업파트너의 강력한 클레임 제기와 사업철수 경험은 시장에서의 신용이 곧 돈이라는 논리와 엄격한 품질관리 및 자신과 거래하는 고정고객을 관리하는 경험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한다(B8). 따라서 남한과의 거래에서 ‘신용=돈’이라는 논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클레임 제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넷째, 정부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험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경제사업 단일창구인 민경련과 다수의 남한 기업인 간에 진행되었던 남북교역의 일대다구도의 불리한 교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은 남북교역이 재개되어도 민경련을 대남 단일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6, B9). 대안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같이 남북교역을 통합 지원 및 전담할 기구를 지정해 민경련의 카운트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설립 혹은 지정하는 남북교역 전담기구가 오히려 업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교역 전문기구가 보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24조치 이전 남북교역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여러 법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³⁵

³⁵ 남북교역 전담기구 설치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남근우, “신(新)남북교역체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과거 제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북한의 상업거래 행태들은 남북교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반면교사이다. 정부와 기업은 남북교역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제출: 10월 27일 ■ 심사: 11월 2일 ■ 채택: 11월 22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상민.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서울: KOTRA, 2006.
KOTRA. 『(연도별)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康日妹. 『本を読む兄本を書く妹』. 東京: 星雲社, 2006.
高崎宗司·朴正鎮.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東京: 平凡社, 2005.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9.
金英達·高柳俊男 編.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東京: 新幹社, 1995.
金元祚. 『凍土の共和國: 北朝鮮幻滅紀行』. 東京: 亞紀書房, 1984.
東北アジア問題研究所 編. 『在日朝鮮人はなぜ帰国したのか』. 東京: 現代人文社, 2004.
林一信·小牧輝夫. 『苦難の行進: 金正日時代の政治経済展望』. 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1997.
木村光彦·安部桂司. 『戦後日朝関係の研究』. 東京: 知泉書館, 2008.
小熊英二·姜尙中 編. 『在日一世の記憶』. 東京: 集英社新書, 2008.
日本 総務省統計局. 『(各年度)日本統計年監』.
韓光熙. 『我が朝鮮総連の罪と罰』. 東京: 文藝春秋, 2002.

2. 논문

- 남근우. “북한 귀국사업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2010.
_____. “북한의 무역패턴변화와 대남교역 상거래 관행.” 『북한학보』. 제42집 제1호, 2017.
_____. “신(新)남북교역체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 2016.
이찬우.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가을호, 2009.
- 김일성.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69년 2월 11일).”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1953년 8월 5일).”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5차 분회열성자대회에 보낸 축하문(1982년 6월 19일).” 『김일성저작집 3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1992.
- 內閣調査室. “在日朝鮮人の北鮮帰還について(下).” 『調査月報』. 第150号, 1968.
- 李燦雨.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經濟關係の歴史と現況” *ERINA REPORT*. vol. 47. 2002.
- 全鎮植. “祖国との合弁は在日の糧.” 『世界』. 10月号, 1994.

North Korean Commercial Transaction during the Investment o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Keun-Woo Nam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abnormal commercial transactions of North Korea that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experienced during their trade with North Korea. Empirical studies on North Korean commercial practices are virtually absent. This article tries to characterize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of North Korean commercial transactions. By analyzing North Korea's commercial transactions toward the South Korea, this study prepares for the forthcoming inter-Korean trade resumption. Although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and South Korean businessmen could gain the upper hand over the North in the past economic trades, many businessmen made a loss due to irr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of the North Korean. The business transactions of North Korea experienced by businessmen are a good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trade. In the future, Governments and businessmen should prepare thoroughly for North Korean commercial practic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trade.

Key Words: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Chongryun(the pro-North Korean organization in Japan), Inter-Korean Trade, Commercial Transaction, United Front Department, the North Korean 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ederation